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박철성, 봉양순, 성흠제,
이은림, 최민규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의 관내 도로(시도이면서 보도를 포함한다)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도로 지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치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하개발사업자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나.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화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이하 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이하 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u>제12조 · 제13조</u> (생략)	<u>다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u> <u>제13조 · 제14조</u>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에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자'를 정의하고,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나. 전제

- 공동조사 비용(연 20억 원 추정, 매월 350개소 조사 계획)은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제공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 예산서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0,000,000천원(연평균 2,0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2조(공동조사)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계(a)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제공자료 활용

4. 덧붙이는 의견 : 공동조사 규모 변동 등에 따라 예산(연 20억 원 추정)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에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자’를 정의하고, 도로의 지하 또는 연결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0,000,000천원(연평균 2,000,000천원)
= 2,000,000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2조(공동조사)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계(a)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제공자료 활용